#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07

발의연월일: 2021. 1. 28.

발 의 자:김영식·곽상도·허은아

김희국 · 김석기 · 한무경

김용파 · 성일종 · 구자근

임이자 · 박 진 · 강민국

박성중 · 정희용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파응용설비가 준공된 경우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파응용설비 중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차폐시설 내에 설치되는 설비로서,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줄 가능성이 없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신설비인 전파운용설비와 같은 방식으로 준 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산업분야에서 고가의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이동통신, 케이블TV 등의 무선국의 경우에는 전파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무선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준공신고만 하면 그 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신고만 하 면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응용설비와 산업의 특성을 함 께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신설, 제72조제2항제4호의2·제4호의3 등).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중차폐시설 등 충분한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공간 내 설 치된 전파응용설비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 차폐시설(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제1항제1호의 설비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2조제2항제4호의2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3 중 "제25조제3항 단서"를 "제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58조제3항" 을 "제58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86조제1호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90조제2호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 응용설비 등) ①다음 각 호의 | 응용설비 등) ①-----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서 신설> 다중차폐시설 등 충분한 전자 파 차폐시설을 갖춘 공간 내 설치된 전파응용설비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 (3) -----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3항 · 제4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단서 신 -----. 다만,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도 설>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주 ④ (생략)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유성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4의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외의	지
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
중차폐시설(전자파 차폐시설	<u> 글</u>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 차펴	설
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말
한다)을 갖춘 제1항제1호의	설
비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형	}을
준용한다.	

④ (현행과 같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4의2. -----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아니하고 운용한 때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 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한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 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 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 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 격하지 못한 경우

-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u>제58</u>
  <u>조제3항</u>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6. ~ 20. (생 략)

③ ~ ⑤ (생 략)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u>제25조제3항(제58</u>
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4의3 <u>제2</u>
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u> 포함한다)</u>
ō <u>제5</u> 8
조제3항 전단
6. ~ 2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86조(벌칙)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u>제58</u> <u>조제3항</u>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 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검사·측정·조 사·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 6. (생략)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 1의2. (생략)
- 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 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 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운용하거나 <u>제25조제3항</u>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의2. ~ 6. (생략)

 1제58
조제3항 전단
 1의2. ~ 6.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1.·1의2. (현행과 같음) 2
<u>제25조제3항(제5</u> 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
<u>는 경우를 포함한다)</u>
2의2. ~ 6. (현행과 같음)